

제4장 이용계약

제07조(이용계약내용)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**계약목적** :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② **계약기간** :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퇴소 당일 이용료를 정산한다.

⑤ 계약의 중지 및 해지

- 이용자 :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혹은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즉시 또는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기관 : 대상자의 사망,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, 60일 이상 본인부담금 연체,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행동을 했을 때,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,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,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을 때,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.

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제08조 (이용비용 및 수납)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 월 이용료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하며, 등급별 이용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

구 분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등급
재가급여 월한도액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구분	분 류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등급
주간보호	3시간 ~ 6시간	36,850	34,020	32,470	30,920	30,920
	6시간 ~ 8시간	49,420	45,620	44,070	42,500	42,500
	8시간 ~ 10시간	61,480	56,760	55,210	53,640	53,640
	10시간 ~ 12시간	67,720	62,570	61,000	59,450	53,640
	13시간초과	72,630	67,100	65,540	63,990	53,640

② 본인부담금

- 일반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, 9%

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

- 식사·간식비는 식사 1식 3,800원 / 간식 1일 1,500원으로 100% 본인이 부담한다.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